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3 선고 2015가단147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16. 10. 6.

판결 선고2016. 11. 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서울 중랑구 D 대 169.6m² 중 별지 도면1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약 6m² 지상의 철제 및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고, 위 (가)부분 토지를 인도하며, 30,000,000원 및 2015. 6. 1.부터 위 (가)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C는 위 구조물에서 퇴거하라.

선택적으로, 원고에게,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같은 별지 제2항 기재 건물 사이 공간 중 별지 도면2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6.55m² 내에 설치한 철제 및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고, 2013. 9. 1.부터 위 구조물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C는 위 구조물에서 퇴거하라.

선택적으로, 원고에게,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남쪽 외벽으로부터 50cm 이내에 설치한 철제 및 콘크리트구조물을 철거하고, 2013. 11. 1.부터 위 구조물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피고 C는 위 구조물에서 퇴거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갑 제1호증,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와 원고의 처 E이 서울 중랑구 D 대 169.6m²(이하 '원고 토지'라 한다)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평슬래브 2층 점포주택(2층 109.06m², 2층 83.78m²) 중 각 1/2지분에 대하여 2001. 10. 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 B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중랑구 F 대 117.4m²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(1층 및 2층 각 58.31m², 지하실 16.73m², 이하 '피고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97. 6. 2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건물 중 철제 및 콘크리트로 건축된 부분(이하 '이 사건 구조물'이라 한다)을 임차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,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구조물이 원고 토지상에 건축되었고,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토지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되었으므로,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고, 원고로 하여금 원고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(원고는 E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채권을 양수하였다)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배상하고, 피고 C는 이 사건 구조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구조물이 원고 토지 위에 건축되었다거나 원고 토지의 경계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되었음을 인정하기에

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김진혜

별지